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 
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23-5
변 호	관련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17.

발 의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 대행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9조제3항 중 “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하며”를 “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며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 
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하며”를 “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 
하며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분노수집·운반 등의 대행)</p> <p>①.·②.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<u>3년 단위로</u> 하며,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대행업체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등에 따라 대행계약기간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. 위 지정 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(생략)</p> <p>제9조의5(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</p>	<p>제9조(분노수집·운반 등의 대행)</p> <p>①.·②.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<u>2년 단위로</u> 하며,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5(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</p>	<p>제9조(분노수집·운반 등의 대행)</p> <p>①.·②.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<u>3년 단위로</u> 하며,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5(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<p>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업무담당 <u>주사</u>가 된다.</p> <p>⑤~⑥ (생략)</p>	<p>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업무담당 <u>팀장</u>이 된다.</p> <p>⑤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⑤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--	--	---